# 정 정 신 고 (보고)

2026년 3월 25일

1. 정정대상 공시서류 : 일괄신고서

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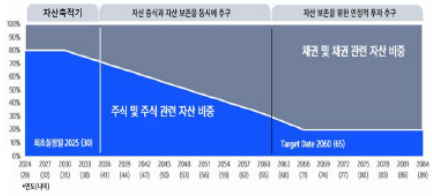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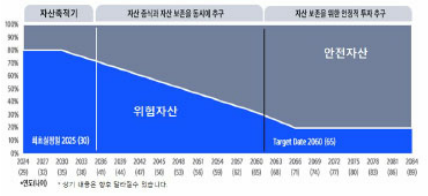
2.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: 2025.6.26

3. 정정사항

| 항 목 |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|---|---|---|---|
| 투자신탁명 | 아니오 | 투자신탁 명칭 변경 | 삼성KODEX **TDF**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**[혼합-재간접형]** | 삼성KODEX **적격TDF**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 투자신탁**[주식혼합-재간접형]** |
| [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]<br><br>[요약정보] 주요투자위험<br><br>[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] 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 나. 특수위험 | 아니오 | 이익금 초과분배 문구 명확화 | **(추 가)** | **15.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에서 취득한 배당 및 이자 등 보유하고 있는 현금을 한도로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분배금 지급 재원이 부족할 경우 일부 자산 매각을 통해 분배금을 마련할 수 있으며, 분배금 지급으로 인해 투자원금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.**<br>**투자신탁의 최초기준가(상장시점의 기준지수)를 기준으로 이익금보다 큰 금액이 분배금으로 지급되었을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판단합니다. 즉, 분배전 기준가가 펀드설정 당시 최초 기준가보다 낮은 경우(최초기준가 이상이었으나 분배로 인해 그 미만으로 낮아진 경우 또는 이미 최초기준가 미만임에도 분배한 경우)이익금 초과분배에 해당됩니다.**<br>**예를 들어 1) 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, 매매에 따른 매매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 2) 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,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 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이라도 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**<br>**이익초과분배여부는펀드 전체 기준으로 판단되며 투자자별로 매입시점이 상이하므로 투자자의 실제 원금과 수익과는 반드시 일치하지 않습니다. 투자자별로 매입시점 기준가격이 분배 전 기준가격보다 높은 경우 이익금 초과분배로 볼 수 있으며 이익금 초과분배가 지속될 경우 투자원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.** |
| 요약정보 | | | | |
| 투자목적 및 투자전략 | 아니오 |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반영(2026. 4.1 시행) | **(추 가)**<br><br>※ TDF(Target Date Fund)란? | **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**<br><br>※ TDF(Target Date Fund)란? |

| 항 목 |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**- 투자자의 은퇴 시점을 Target Date로 하여 생애주기에 따라 시간이 흐를수록 적극적인 투자에서 안정적인 투자로 포트폴리오를 자동으로 조정해주는(Glide Path) 자산배분 펀드입니다.**<br><br>- 은퇴시점에 따라 설계된 상품 라인업을 통해 65세를 은퇴기준으로 하여, 은퇴하는 해의 상품(**TDF** 2030/**TDF** 2040/**TDF** 2050/**TDF** 2060 ETF)을 선택 가능합니다. | **- 타깃데이트펀드(TDF, Target Date Fund)란 투자자의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.**<br>- 은퇴시점에 따라 설계된 상품 라인업을 통해 65세를 은퇴기준으로 하여, 은퇴하는 해의 상품(**적격TDF** 2030/**적격TDF** 2040/**적격TDF** 2050 /**적격TDF** 2060 ETF)을 선택 가능합니다. |
| 투자실적 추이 | 아니오 |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| **-** | **업데이트** |
| 운용전문인력 | 아니오 | 운용역 변경 | **문현욱 운용역** | **이정택 운용역, 황희영 운용역** |
| 제2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 | | | | |
| 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| 아니오 | 투자신탁 명칭 변경,<br>운용역 변경 | **(추 가)** | **변경시행일: 2026.4.1**<br>**변경사항: 투자신탁 명칭 및 투자한도 변경 (삼성KODEX 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혼합-재간접형] → 삼성KODEX 적격TDF 2060 액티브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[주식혼합-재간접형]), 운용역 변경(문현욱 운용역 → 이정택 운용역, 황희영 운용역)** |
| 5. 운용전문인력 | 아니오 | 운용역 변경 | **문현욱 운용역** | **이정택 운용역, 황희영 운용역** |
| 7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목적 | 아니오 |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반영(2026.4.1 시행) | 가. 이 투자신탁은___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br>**(추 가)** | 가. 이 투자신탁은___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운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<br>**이 투자신탁은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5-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'안전자산'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상으로 운용하다가, 투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점차 늘려 2060년(Target Date) 이후부터는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운용합니다. 또한,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주식, 그외 자산 등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차 줄이고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시행합니다.**<br><br>*** TDF: 타깃데이트펀드(TDF, Target Date Fund)란 투자자의 은퇴예상시기 등 투자목표시점이 다가올수록 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차 줄여나가는 생애주기형 자산배분 전략을 통하여 투자위험을 낮추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합니다.** |
|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| 아니오 |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반영(2026.4.1 시행) | 가. 투자대상<br>1) 집합투자증권 60% 이상<br>**ⅰ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80미만으로 한다. 다만, 2060년 1월 1일 이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주식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40이하로 한다.**<br>**ii.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80이하로 한다. 다만, 2060년 1월 1일 이후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채권에 대한 투자는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이상으로 한다. 단,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채권 관련 자산 중 하이일드 채권 및 하이일드 채권 관련 자산의 비중은 본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로 함과 동시에,** | 가. 투자대상<br>1) 집합투자증권 60% 이상<br>**(삭 제)** |

| 항 목 |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| **본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이 편입하는 채권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내로 한다.**<br>**iii.**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 | **단,** 주식 및 채권을 제외한 자산 관련 집합투자증권에의 투자는 합산하여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미만으로 한다. |
| | | | 3) 채권 40%이하<br>**(추 가)** | 3) 채권 40%이하<br>**단, 투자적격등급 이외의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같음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하로 하고, 채무증권 투자액의 100분의 50 이하로 한다.** |
| | | | **(추 가)** | **9)현금성 자산 및 채무증권:**<br>**금융투자업규정제5-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상으로 하고, 2060년 1월 1일 이후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60 이상으로 한다.** |
| | | | **(추 가)** | **10) 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:**<br>**해외 특정 국가에 대한 주식 및 채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주식 및 채권을 포함)에의 투자는 주식의 경우 투자신탁 주식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하고, 채권의 경우 투자신탁 채권투자액의 100분의 80 이내로 한다.** |
| | | | ※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**1),2),3),4),5)**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<br>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**1),2),3),4),5)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| ※ 다음의 경우에는 위의 **1),2),3),4),5),9),10)**의 투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함.<br>⑤ 투자신탁재산인 투자증권 등의 가격변동으로 **1),2),3),4),5),9),10)**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|
| 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투자방침 및 수익구조 | 아니오 | 퇴직연금감독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반영(2026.4.1 시행) | 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<br>(1) 기본 운용전략<br>**(추 가)**<br>1) 이 투자신탁은 액티브상장지수펀드로 S&P Global Indices에서 산출· 발표하는 Samsung KoreaTarget Date 2060 Index(KRW기준)를 비교지수로 하여 비교지수 대비 초과성과를 목표로 신탁재산의 60%이상을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할 계획입니다.<br>**이 투자신탁은 주식, 채권, 그외 자산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에 분산투자하되 주식 및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주된 투자대상으로 하고 주기적으로 투자대상자산의 비중을 조절하는 자산배분형 ETF입니다.**<br>(2) 비교지수 소개 | 가. 투자 전략 및 위험 관리<br>(1) 기본 운용전략<br>**이 투자신탁은 퇴직연금감독규정시행세칙 제5조의2에 따른 적격 집합투자기구입니다.**<br>(좌 동)<br>**이 투자신탁은 「금융투자업규정」 제5-23조의2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(다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투자하는 현금성자산 및 채무증권을 포함, 이하 '안전자산')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% 이상으로 운용하다가, 투자 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안전자산에의 투자를 점차 늘려 2060년(Target Date) 이후부터는 자산총액의 60% 이상으로 운용합니다. 또한, 투자기간 경과에 따라 주식, 그외 자산 등의 위험자산 투자 비중을 점차 줄이고 안전자산을 확대하는 자산배분전략을 시행합니다.**<br>(2) 비교지수 소개 |

| 항 목 |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이익금 초과분배 문구 명확화 | <br>2060 글라이드 패스_변경전<br>**(추 가)**<br><br>(3) 세부 운용전략<br>1)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비교지수 추종을 위해 글로벌주식 및 국내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할 예정이며 글로벌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을 비교지수 내 Glide Path, 시장상황 등에 따라 조절하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.<br>2) 이 투자신탁은 특정목표시점(2060년)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특정목표시점(2060년)까지 **주식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 위험 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채권 관련 집합투자증권 등의 비율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**<br>※ 특정목표시점(2060년)까지의 잔여기간에 따른 실제 자산배분은 대내외 거시 경제 환경의 변화, 시장상황 등으로 비교지수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.<br><br>**(추 가)** | <br>2060 글라이드 패스_변경후<br>[Glide Path 구간별 위험자산 VS 안전자산 비중]<br><br>2060 비중<br>(3) 세부 운용전략<br>1) 이 투자신탁은 기본적으로 비교지수 추종을 위해 글로벌주식 및 국내채권 등 관련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할 예정이며 글로벌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또는 국내채권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의 비중을 비교지수 내 Glide Path, 시장상황 등에 따라 조절하는 비율조정형 자산배분전략을 활용합니다.<br>2) 이 투자신탁은 특정목표시점(2060년)까지의 잔여기간을 고려하여 특정목표시점(2060년)까지 **위험자산의 비중을 점진적으로 축소함과 동시에 안전자산의 비중을 확대할 계획입니다.**<br>(좌 동)<br><br>**(9)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**<br>**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.**<br>**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.**<br>**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,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**<br>**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,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** |
| 14. 투자신탁분배금 및 과세에 관한 사항 | 아니오 |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| 가. 이익분배<br>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__ 분배를 유보합니다.<br>1)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br>**(추 가)**<br><br>2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br>3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br>**(추 가)** | 가. 이익분배<br>(1)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__ 분배를 유보합니다.<br>1)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가 지수 구성종목을 교체하거나 파생상품에 투자함에 따라 계산되는 이익<br>**(다만,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(제4호의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은 제외)으로서 2025년 7월 1일 이후 발생분은 제외한다.)**<br>2) 법 제238조에 따라 평가한 집합투자재산의 평가이익<br>3) 법 제240조제1항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른 집합투자재산의 매매이익<br>**4) 법 제234조에 따른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로서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식의 가격만을 기반으로 하** |

| 항 목 | 정정요구·명령 관련 여부 | 정정사유 | 정 정 전 | 정 정 후 |
|---|---|---|---|---|
| | | 이익금 초과분배 문구 명확화 | 나. 투자신탁분배금<br>(1) 집합투자업자는 가.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**(추 가)**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<br><br>**(추 가)** | **는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합투자기구 중 지수의 변화를 그대로 추적하기 위해 배당이익을 구성종목의 비중에 따라 재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및 배당이익**<br><br>나. 투자신탁분배금<br>(1) 집합투자업자는 가.이익분배와는 별도로 투자신탁재산내의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신탁분배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**분배금은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초과할 수 있고**,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분배금의 지급기준일로부터 제3영업일전까지 투자신탁분배금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증권시장에 공시하여야 합니다.<br>**(4) 이익금 초과분배에 관한 사항**<br>**펀드는 분배금 지급기준일에 따라 분배금을 지급을 할 수 있습니다.**<br>**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이익금을 초과하여 분배할 수 있습니다.**<br>**①보유 중인 재산의 가격하락에 따른 평가손실, 매매에 따른 매매 손실이 발생되어 이익금이 없거나 분배할 금액보다 작은 경우**<br>**②일부 보유재산에서는 매매이익, 평가이익이 발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펀드 전체에서 손실이 발생된 경우 등** |
| 제3부. 집합투자기구의 재무 및 운용실적 등에 관한 사항 | | | | |
| 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 | 아니오 |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| - | **업데이트** |
| 제4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 | | | | |
|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| 아니오 | 작성기준일 기준으로 갱신 |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<br>라. 운용자산 규모 |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**업데이트**<br>라. 운용자산 규모 **업데이트** |